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 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백혜련·신동근·조승래

김병욱 • 박광온 • 권칠승

박 정・안호영・김민기

박완주 · 김영주 · 김철민

박홍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20. 1. 14. 공포, 7. 15. 시행)됨에 따라,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 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 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국세청장"을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·국세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	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	3
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	
판소 재판관・중앙선거관리위	
원회 위원・국무위원・방송통	
신위원회 위원장・국가정보원	
장・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・	
금융위원회 위원장・국가인권	
위원회 위원장· <u>국세청장</u> ·검	고위공직자범죄
찰총장 • 경찰청장 • 합동참모의	<u>수사처장・국세청장</u>
장・한국은행 총재・특별감찰	
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(이	
하 "헌법재판소재판관등"이라	
한다)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	
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	
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	
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・대통	
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	
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	
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	
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	
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	
할 수 있다.	,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